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

제정 2012. 09. 11.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-52호
개정 2013. 11. 22.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3-19호
개정 2014. 07. 10.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4-08호
개정 2015. 07. 31.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-08호
개정 2015. 09. 23.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-21호
개정 2016. 11. 01.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6-10호
개정 2017. 11. 06.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7-11호
개정 2018. 10. 30.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8-13호
개정 2019. 10. 31.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9-11호
개정 2020. 11. 03.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0-06호
개정 2021. 10. 20.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1-11호
개정 2022. 09. 30.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-15호
개정 2023. 10. 25.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3-03호
개정 2026. 00. 00.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 제2026-00호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법이라 한다) 제20조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”이란 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(이하 “방송사업자”라 한다)의 광고매출액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수탁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.
2. “방송광고 결합판매”(이하 “결합판매”라 한다)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제3호에 따른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.
3. “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”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방송광고를 판매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한국방송공사, (주)문화방송, (주)SBS를 말한다.
4. “결합판매사업자”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결합판매를 지원하도록 고시되는 광고판매대행자를 말한다.
5. “결합판매지원대상사업자”(이하 “지원대상사업자”라 한다)란 법 제20조에 따라 결합판매를 지원받도록 고시되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.
6. “결합판매 매출액”이란 결합판매로 발생한 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을 말한다.

제3조(결합판매사업자)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법 제20조에 따라 결합판매를 하여야 하는 결합판매사업자로 본다.

1. 한국방송공사와 ㈜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
2. ㈜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

제4조(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산정) ① 법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은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지원대상사업자들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총 결합판매 매출액을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들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들을 말한다.

1. 결합판매사업자가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

2. 결합판매를 지원받도록 고시된 지원대상사업자

3.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계약 등에 따라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방송사업자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결합판매사업자가 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및 결합판매 매출액은 각 결합판매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각 결합판매사업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을 구분함에 있어 결합판매 이외의 매출액이 결합판매사업자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 비중을 적용하여 구분한다.

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합판매된 비율 산정 시 결합판매된 비율은 백분율(%)로 하여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까지 산정한다(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)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은 [별표 1]과 같다.

제5조(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규모 등) ① 법 제2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각 지원대상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결합판매 매출액을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들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. 다만, 지원대상사업자 변동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규모의 합계가 제4조제1항에 따른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본문에 따라 산정된 변동 전 지원대상사업자별 비율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.

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정률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에서 지원대상사업자 변동에 따라 추가된 지원비율을 제외한 비율을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결합판매사업자가 결합판매를 지원하도록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대상사업자의 지원규모는 결합판매사업자별로 각각 산정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규모 산정시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들, 지원규모의 비율 단위 등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

⑤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사업자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[별표 2]와 같다.

제6조(결합판매 균등지원) ① 결합판매사업자는 지원대상사업자의 안정적인 광고수익의 확보를 위하여 결합판매가 특정 프로그램 시간대 또는 특정 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방식은 결합판매사업자와 지원대상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.

제7조(결합판매사업자의 결합판매 실적 관리) ① 결합판매사업자는 지원

대상사업자에 대한 결합판매 실적 산정을 위하여 결합판매 매출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사업자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 발생시 구분 기준에 따라 결합판매 매출을 구분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지원대상사업자는 결합판매사업자에게 결합판매를 통해 판매된 방송광고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자료의 제출 등)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에 따라 결합판매사업자에게 결합판매 매출 자료를 [별지 1]과 [별지 2]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② 결합판매사업자는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당 사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.

제9조(결합판매 이행 점검 등)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직전 회계연도의 영업보고서가 검증·확정되면 [별표 1]의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및 [별표 2]의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에 대한 결합판매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.

② 결합판매사업자는 해당연도 광고매출총액의 미확정 등의 사유로 해당연도 결합판매 지원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광고매출총액이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해당 실적을 작성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결합판매사업자가 지원대상사업자 변동의 사유로 해당 사업자의 결합판매 최소 이행규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변동이 발생한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8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해당 실적을 작성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결합판매 지원규모 등의 재고시)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된 직전 회계연도의 영업보고서가 검증·확정되면 해당 영업보고서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및 결합판매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적용되는 [별표 1] 및 [별표 2]를 매년 고시한다.

② 당해연도의 [별표 1] 및 [별표 2]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당해 연도의 결합판매 지원의무는 기존에 고시된 [별표 1] 및 [별표 2]를 잠정 적용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[별표 1] 및 [별표 2]와 제2항에 따라 잠정 적용한 [별표 1] 및 [별표 2]가 달라지는 경우 변경된 [별표 1] 및 [별표 2]를 당해 연도에 적용한다.

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, 결합판매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판매대행 계약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[별표 1] 및 [별표 2]를 수정 고시할 수 있다.

제11조(규제의 재검토)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

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재검토기한)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<제2012-52호, 2012.9.11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5년 미만 지원대상사업자의 결합판매 지원규모 특례) ①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시 당시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이 발생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지원대상사업자의 2012년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해당 사업자의 2011년도 결합판매 매출액을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들의 2011년도 지상파방송광고 총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에 17.3%를 가중하여 산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대상사업자의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적용하되, 2017년부터는 제5조에 따라 산정한다.

부 칙<제2013-19호, 2013.11.22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2014-8호, 2014.7.10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2015-8호, 2015.7.31.>

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<제2015-21호, 2015.9.23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2016-10호, 2016.11.1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2017-11호, 2017.11.6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2018-13호, 2018.10.30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2019-11호, 2019.10.31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2020-6호, 2020.11.3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2021-11호, 2021.10.20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2022-15호, 2022.09.30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2023-03호, 2023.10.25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규 지원대상사업자의 결합판매 지원에 대한 특례)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시 당시 신규 지원대상사업자의 2023년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해당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평균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에 전체 지원대상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중 결합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해당 결합판매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평균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대상사업자의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하되, 2028년부터는 제5조에 따라 산정한다.

부 칙<제2026-00호, 2026.00.00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규 지원대상자의 결합판매 지원에 대한 특례) ①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시 당시 신규 지원대상사업자의 2026년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해당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평균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에 전체 지원대상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중 결합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해당 결합판매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평균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대상사업자의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하되, 2031년부터는 제5조에 따라 산정한다.

[별표1]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

한국방송공사 및 ㈜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(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)	12.0792%
㈜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(㈜에스비에스엔앰씨)	8.9954%

[별표2]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

1.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한국방송공사 및 ㈜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)

구분	지원대상 사업자	5년 평균 비율(%)	조정률(%)	결합판매 지원규모(%)
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	부산문화방송㈜	0.6172%	99.5445%	0.6144%
	대구문화방송㈜	0.4551%		0.4530%
	광주문화방송㈜	0.3771%		0.3754%
	대전문화방송㈜	0.4140%		0.4121%
	전주문화방송㈜	0.3787%		0.3770%
	㈜엠비씨경남	0.6364%		0.6335%
	제주문화방송㈜	0.4502%		0.4481%
	울산문화방송㈜	0.3694%		0.3677%
	춘천문화방송㈜	0.3988%		0.3970%
	㈜엠비씨강원영동	0.7246%		0.7213%
	포항문화방송㈜	0.3249%		0.3234%
	여수문화방송㈜	0.2975%		0.2961%
	㈜엠비씨충북	0.8107%		0.8070%
	원주문화방송㈜	0.3374%		0.3359%
	안동문화방송㈜	0.3060%		0.3046%
	목포문화방송㈜	0.2949%		0.2936%
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	(재)CBS	1.7374%		1.7295%
	(재)불교방송	0.4946%		0.4923%
	(재)가톨릭평화방송	0.4305%		0.4285%
	(재)극동방송	0.1980%		0.1971%
	(재)원음방송	0.2268%		0.2258%
	(재)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티비에스	0.0515%		0.0513%
	(재)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	0.0068%		0.0068%
	(재)광주영어방송재단	0.0126%		0.0125%
	한국교육방송공사	1.4056%		1.3992%
	㈜경인방송	0.1580%		0.1573%
	㈜YTN 라디오	0.1645%		0.1638%
	㈜와이티엔디엠비			0.0550%
합계		12.0792%		12.0792%

2. ㈜에스비에스엠앤씨(㈜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)

구분	지원대상 사업자	결합판매 지원규모(%)
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	㈜케이엔엔	1.1293%
	㈜티비씨	0.8793%
	㈜광주방송	0.7362%
	㈜대전방송	0.6139%
	㈜전주방송	0.4077%
	㈜울산방송	0.4095%
	㈜청주방송	0.4220%
	㈜지원방송	0.5557%
	㈜제주방송	0.3997%
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	오비에스경인티브이㈜	3.4421%
합계		8.9954%

[별지1] 지상파방송사별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제출양식

(단위: 원)

지상파방송사업자	1사분기			2사분기			3사분기			4사분기			합계
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
합계													

[별지2] 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매출액 자료 제출양식

(단위: 원)

지원대상 사업자	1사분기			2사분기			3사분기			4사분기			합계	비고
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	
합계														

※ 비고는 결합판매되는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명시한다.

※ 복수의 주요지상파방송사업자와 결합판매되는 지원대상사업자는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 별로 결합판매 매출액을 구분한다.